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2311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규

변 론 종 결 2021. 7. 6.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6. 접수 제485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7. 3. 2.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의 E 대출, 2007. 8. 14. 8,83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나. D은행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로 순차 양도되었고, G 유한회사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46337호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41,997,877원과 그중 22,121,2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5. 위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은 다시 2016. 5. 27. H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후 2018. 12. 21.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H 주식회사는 2019. 3. 19.경 C에게 위와 같은 최종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의 배우자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6.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그 자녀들인 C, J, K이 있으며, 그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3/9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2/9이다.

마.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와 C, J, K은 2020. 9. 16. 망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6. 접수 제4850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채권 외에도 L은행을 상대로 2,3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피고 악의의 추정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이 C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 부분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C의 모친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한 피고 소유의 재산으로 상속대상 재산이 아니었다(① 주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는 6가구에 대한 636,5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의 합계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가를 초과한다. 또한 C는 망인으로부터 망인 사망 전까지 230,000,000원을 생전증여받았으므로, 망인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위와 같은 분할협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였다(③ 주장).

2)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오로지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나) 갑 제6, 8, 9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는 M호 N에 대한 116,500,000원 채무, O호 P에 대한 100,000,000원 채무, Q호 R에 대한 120,000,000원 채무, 지층S호 T에 대한 80,000,000원 채무이고, 위 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은 416,500,000원(= 116,500,000원 + 100,000,000원 + 120,000,000원 + 80,000,000원)인 사실(피고는 그 외에도 추가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그 외 보증금반환채무는 망인 사망 후에 피고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이다), 위 임차인들 중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T, N 둘 뿐이고, 이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합계액은 196,500,000원(= 116,500,000원 + 80,000,000원)인 사실,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원금이 15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세는 적어도 8억 원 이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합계액은 566,500,000원(= 416,500,000원 + 150,0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에 주민등록이 마쳐진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 196,500,000원(이 경우도 확정일자를 받았음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을 더하더라도 346,500,000원(= 196,500,000원 + 150,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설사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중 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채무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가 과다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C가 망인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생전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와 같은 생전증여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망인의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중 C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위와 같이 인수하거나 상속한 금전채무는 C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에 반영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망인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②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경위 및 내용, C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6. 접수 제485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별 지 목 록]

[건물의 표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도로명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볼근큰크리트 구조 원스리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7가구)

지층 74.25 m² 다가구주택(2가구)1층 74.25 m² 다가구주택(2가구)2층 74.19 m² 다가구주택(2가구)3층 65.16 m² 다가구주택(1가구)

[토지의 표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다

132.9 m²

공.

